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0 선고 2020가단1340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용길, 권용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권(허가번호 D)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대출금 채권 등

1) 원고는 2018. 8. 1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F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 2019. 9.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일 무렵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권(허가번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4호증 제1면,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0. 7. 20.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4호증 제2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신고

1) 피고는 2010. 8. 13.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 및 F은 2015. 12. 30.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운송주선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양도양수서(을 제2호증, 양도인 F, 양수인 피고)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20. 4. 22.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서(갑 제9호증, 양도인 소외 회사, 양수인 피고)를 작성하여 2020. 4. 23. 과천시청에 위 사업권에 관한 양수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4. 22.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은 것은 2020. 4. 22.이 아니라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5. 12. 30.이다. 원고의 채권은 2015. 12. 30.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당시 소외 회사 및 F은 채무초과상태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가 2015. 12. 30.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화물운송주선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에는 ‘사업권의 양도양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같은 날 작성된 양도양수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사업권의 주체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F 개인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위 각서 및 양도양수서에 사업권의 내용, 허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고도 즉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동생의 친구인 F이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바라는 마음이었고, 소외

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매출을 늘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오히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소외 회사가 운송주선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0.경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각 문서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확정적인 양도양수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언제 있었는가는 관할관청인 과천시에 제출된 사업권 양도양수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계약일은 2020. 4. 22.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사업권을 2020. 4. 22.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도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